

2023년 장기요양수가안내문

◆본인부담금 인상 안내◆

2023년 01월 01일자로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보험수가가 방문요양 **4.92%** 인상됨에 따른 본인부담금 납부금액 인상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와 같음으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일반)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100%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지급.
		94%(감경6%)	
		91%(감경9%)	
		100%(기초수급자)	
본인부담금	보험료 (개인부담금)	15%(일반)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부담금이 15%임
		6%(감경)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부담금이 6%임
		9%(감경)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부담금이 9%임
		0%(기초수급자)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부담금이 0%임

-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월 한도액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2)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제공시간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시간별수가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00	58,930	65,000
본인부담금	2,429	3,522	4,748	6,042	7,046	7,932	8,840	9,750

*인상에 따른 수가 적용 기준이 **2023.01.0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2023년 01월부터 본인부담금 인상분이 반영되어 발송됩니다.**